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6
----------	-----

2014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4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가. 제안이유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주민번호 처리 법정주의)하는 「개인 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신설('14.8.7일 시행)에 따라 에코마일리지 참여 자중 일정비율의 온실가스 절감 시 현금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실거주지 확인에 필요한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목적조항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시행” 규정(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원안동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8.28 ~ 2014.9.17)결과 : 의견 없음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 영 배)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담당자가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실거주지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법」¹⁾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을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²⁾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가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조항이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을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에코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수집된 에너지사용량(전기, 수도, 도시가스)을 6개월 주기로 체크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회원분에게는 저탄소 활동에 재투자 되는 인센티브를 지급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바지함”을 “이바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복지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u>이바지</u>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 <u>이바지</u> <u>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 -----.</p>